

#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69

제출년월일 : 1999. 2.  
제출자 : 충주시장

## 1. 제정이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환경보전 사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충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주체별 책무 및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함(안 제1조 내지 제7조)
- 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 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등 생태 계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라. 환경 전문가 및 민간단체등이 참여하여 정확한 환경상황을 측정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과 재정지원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 마.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함(안 제15조)
- 바. 시장은 다른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환경보전 시책을 광역적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함(안 제16조)
- 사. 환경보전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백서 작성, 정보의 공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환경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토록 함(안 제8조, 제17조 내지 제20조)
- 아. 기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3.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법제상의 조치등)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4. 사전예고결과 : 제출의견없음**

**5. 기타참고자료 : 없 음**

#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체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체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계승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 함과 동시에 체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체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등 다양성의 확보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폐기물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 할 책무를 진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폐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 할 책무를 진다.

③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폐적인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언론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는 등

필요한 조치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백서) ①시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 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 할 경우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의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 등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해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해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시는 공원 및 농지 등 그외의 공공시설 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 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  
②시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환경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 장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제17조(정보의공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②시는 환경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 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민참여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환경감시원 운영) ①시는 시민들이 지역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에 대하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20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 또는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령 발 췌 안

-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법 제상의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 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